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431 |
|----------|-----|

2023. 10. 18.(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오영탁 의원 등 7인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4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0월 16일

- 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오영탁 의원)

-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문을 일치시키고,
- 위원회의 주요 심사·결정사항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심사결과에 따른 징계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같이 회의 비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회의 비공개 근거 명문화(안 제7조제5항 신설)
- 연차보고서 제출기한 변경(안 제10조)
 - 제2차 정례회에 →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사람을 의미하는 “자” → “사람” (안 제2조, 7조)
 - 법령과 상이 : 풍부한 자 → 있는 사람 (안 제2조)
 - 띄어쓰기 : 남은기간 → 남은 기간 (안 제5조)
 - 정비대상 용어
 - 통괄한다. → 총괄한다(안 제6조)
 - 제24조 내지 법 제29조 →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서정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한 개정으로,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의 연차보고서 제출 기한을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상위법과 일치시켰으며, 상위법령 시행령에 근거하여 위원회 회의에 관한 비공개 근거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등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음.
-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법적 안정성 향상과 개정 목적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공직자윤리법」”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법”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전임자의 남은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괄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중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를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로 한다.

제10조 중 “제2차 정례회에”를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 윤리법</u>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u>시민단체</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 윤리법</u>」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결정을 위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u>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u>(「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p> |

| 현행 | 개정안 |
|---|---|
| <p>제3조(기능) ① (생략)</p> <p>1. <u>공직자윤리법</u>에 따른 안전 심사·결정 승인</p> <p>2. (생략)</p> <p>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u>의하여</u>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② (생략)</p> <p>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u>공직자윤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생략)</p> <p>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남은기간</u>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p> | <p>제3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u>공직자윤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 심사·결정 승인</p> <p>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u>따라</u>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u>별</u>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p> <p>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u>으로 한다.</p> <p>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p> |

| 현 행 | 개 정 안 |
|--|---|
| <p>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u>통괄</u>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생략)</p> <p>1.~3. (생략)</p> <p>4. <u>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u> 고발</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u>자와</u> 관계있는 사항</p> <p>3. (생략)</p> <p>④ (생략)</p> <p><신설></p> <p>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u>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가 <u>정하는 바에</u>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p> | <p>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u>총괄</u>한다.</p> <p>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4. <u>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u> 대한 고발</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u>사람과</u> 관계있는 사항</p> <p>3.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u></p> <p>제9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u>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p> |

| 현행 | 개정안 |
|---|---|
| <p>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p>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⑤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개정 내용이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